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윤준병의원 대표발의)

|          |      |
|----------|------|
| 의안<br>번호 | 8766 |
|----------|------|

발의연월일 : 2025. 3. 10.

발의자 : 윤준병 · 임광현 · 주철현  
송옥주 · 이원택 · 조계원  
박민규 · 정동영 · 허영  
신영대 · 김태선 · 문대림  
황명선 · 김윤덕 의원  
(14인)

### 제안이유

현행법은 어업용 토지, 축사용지, 영농자녀등이 증여받는 토지, 조합법인 등 농어업 관련 기업 및 개인에게 증여세, 양도소득세, 법인세 등을 감면하는 조항을 두고 있음.

그런데 해당 규정들은 농어업 분야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감면이 필요한 규정임에도 불구하고, 2025년 12월 31일부로 일몰될 예정으로 더 이상 세제 지원을 할 수 없는 문제가 발생하여 개선의 필요성이 있음.

이에 2025년 12월 31일로 일몰이 도래하는 양도소득세 및 증여세 등 감면사항 중 어업용 토지, 축사용지, 영농자녀등이 증여받는 토지, 조합법인에 대한 세제 지원 등을 2030년 12월 31일까지로 5년 연장함으로써 농어업인의 경영 불안정 해소와 식량안보 확보를 지속적으로

도모하고자 함.

## 주요내용

- 가. 농식품 투자조합 출자에 따른 양도차익 및 배당소득 비과세를 2030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함(안 제13조).
- 나. 폐업을 위해 8년 이상 직접 축산에 사용한 축사용지를 양도하는 경우의 양도소득세 감면을 2030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함(안 제69조의2).
- 다. 어업용 토지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특례를 2030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함(안 제69조의3).
- 라. 영농자녀에게 증여하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 면제를 2030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함(안 제71조).
- 마. 농업협동조합, 수산업협동조합 등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를 2030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함(안 제72조).
- 바. 농어가목돈마련저축으로 발생한 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를 2030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함(안 제87조의2).
- 사. 조합등예탁금에 대한 저율과세 특례를 2030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함(안 제89조의3).
- 아. 농어촌주택 취득 후 기존주택 양도시 부여하는 양도소득세 특례를 2030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함(안 제99조의4).
- 자. 우수 선화주기업에 대한 세제 지원을 지속하기 위해 우수 선화주

기업 인증을 받은 화주 기업에 대한 소득세 특례를 2030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함(안 제104조의30).

차. 유기농어업자재의 부가가치세에 대한 영(零)의 세율 적용을 2030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함(안 제105조).

카. 농업인이 직접 수입하는 농업용 기자재 및 직수입 어업용 기자재, 도서지방 자가발전용 석유류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를 2030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함(안 제106조)

타. 연안을 운행하는 여객선박에 사용할 목적으로 한국해운조합에 직접 공급하는 석유류 등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 등 면제를 2030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함(안 제106조의2).

파. 도서지방 자가발전용 석유류에 대한 개별소비세 면제를 2025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함(안 제111조).

하. 연안화물운송사업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유에 대한 조세특례를 2030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함(안 제111조의5).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제1호 및 같은 조 제4항 중 “2025년”을 각각 “2030년”으로 한다.

제69조의2제1항 본문 중 “2025년”을 “2030년”으로 한다.

제69조의3제1항 본문 중 “2025년”을 “2030년”으로 한다.

제7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2025년”을 “2030년”으로 한다.

제7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2025년”을 “2030년”으로 한다.

제87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중 “2025년”을 “2030년”으로 한다.

제89조의3제1항 중 “2025년”을 “2030년”으로, “2026년”을 각각 “2031년”으로 한다.

제99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2025년”을 “2030년”으로 한다.

제104조의30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2025년”을 “2030년”으로 한다.

제10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2025년”을 “2030년”으로 한다.

제10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2025년”을 “2030년”으로, “2026년”을 “2031년”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2025년”을 “2030년”으로 한다.

제106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2025년”을 “2030년”으로 한다.

제1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2025년”을 “2030년”으로 한다.

제111조의5제1항 중 “2025년”을 “2030년”으로 한다.

## 부 칙

i)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                                                                                                                                                                                                                                  |                                                                                                                                                |
|----------------------------------------------------------------------------------------------------------------------------------------------------------------------------------------------------------------------------------|------------------------------------------------------------------------------------------------------------------------------------------------|
| 2. ~ 7. (생략)                                                                                                                                                                                                                     | 2. ~ 7. (현행과 같음)                                                                                                                               |
| ② · ③ (생략)                                                                                                                                                                                                                       | ② · ③ (현행과 같음)                                                                                                                                 |
| ④ 벤처투자회사, 창업기획자, 벤처기업출자유한회사 또는 신기술사업금융업자가 제1항에 따른 출자로 인하여 창업기업, 신기술사업자, 벤처기업, 신기술창업전문회사 또는 코넥스상장기업으로부터 <u>2025년</u> 12월 31일까지 받는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법인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 ④ -----<br>-----<br>-----<br>-----<br>-----<br>-----<br>-----<br>-----<br><u>2030년</u><br>-----<br>-----<br>-----.                             |
| ⑤ (생략)                                                                                                                                                                                                                           | ⑤ (현행과 같음)                                                                                                                                     |
| 제69조의2(축사용지에 대한 양도 소득세의 감면) ① 축산에 사용하는 축사와 이에 땔린 토지 (이하 이 조 및 제71조에서 “축사용지”라 한다) 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축산에 사용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축사용지를 폐업을 위하여 <u>2025년</u> 12월 31일까지 양도함에 따라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 | 제69조의2(축사용지에 대한 양도 소득세의 감면) ① -----<br>-----<br>-----<br>-----<br>-----<br>-----<br>-----<br>-----<br><u>2030년</u><br>-----<br>-----<br>-----. |

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해당 토지가 주거지 역등에 편입되거나 「도시개발법」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환지처분 전에 해당 축사용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주거지역 등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까지 발생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에 대하여만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② ~ ④ (생 략)

제69조의3(어업용 토지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어업용  
토지등 소재지에 거주하는 대  
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8  
년 이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어업에 사용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어업용  
토지등을 2025년 12월 31일까  
지 양도함에 따라 발생하는 소  
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  
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  
을 감면한다. 다만, 해당 어업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69조의3(어업용 토지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  
-----  
-----  
-----  
-----  
-----  
-----  
-----  
-----  
2030년  
-----  
-----  
-----  
-----  
-----  
-----

|                                                                                                                                                                                                         |                                            |
|---------------------------------------------------------------------------------------------------------------------------------------------------------------------------------------------------------|--------------------------------------------|
| 용 토지등이 주거지역등에 편입되거나 「도시개발법」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환지처분전에 해당 어업용 토지등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주거지역등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까지 발생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에 대해서만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                                            |
| (2) · (3) (생 략)                                                                                                                                                                                         | (2) · (3) (현행과 같음)                         |
| 제71조(영농자녀등이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의 감면) ①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농지·초지·산림지·어선·어업권·어업용 토지등·염전 또는 축사용지(해당 농지·초지·산림지·어선·어업권·어업용 토지등·염전 또는 축사용지를 영농조합법인 또는 영어조합법인에 현물출자하여 취득한 출자지분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농지등”이라 한다)를 농지등 | 제71조(영농자녀등이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의 감면) ① ----- |



니한 당기순이익(當期純利益)을 말한다]에 「법인세법」 제24조에 따른 기부금(해당 법인의 수익사업과 관련된 것만 해당 한다)의 손금불산입액과 같은 법 제25조에 따른 기업업무추진비(해당 법인의 수익사업과 관련된 것만 해당한다)의 손금불산입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손금의 계산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합한 금액에 100분의 9[해당금액이 20억원(2016년 12월 31일 이전에 조합법인간 합병하는 경우로서 합병에 따라 설립되거나 합병 후 존속하는 조합법인의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와 그 다음 사업연도에 대하여는 40억원을 말한다)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해서는 100분의 12]의 세율을 적용하여 과세(이하 이 조에서 “당기순이익과세”라 한다)한다. 다만, 해당 법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당기순이익과세를 포기한 경우





기간(이하 이 조에서 “농어촌주택등취득기간”이라 한다) 중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1채의 주택(이하 이 조에서 “농어촌주택등”이라 한다)을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하여 3년 이상 보유하고 그 농어촌주택등 취득 전에 보유하던 다른 주택(이하 이 조에서 “일반주택”이라 한다)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농어촌주택등을 해당 1세대의 소유주택이 아닌 것으로 보아 「소득세법」 제89조제1항제3호를 적용한다.

## 1. · 2. (생략)

## ② ~ ⑧ (생략)

제104조의30(우수 선화주기업 인증을 받은 화주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① 「해운법」 제47조의2에 따라 우수 선화주기업 인증을 받은 화주 기업(「물류정책기본법」 제43조제1항에 따라 국제물류주선업자로 등록한 기업으로 한정한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이하

### 1. • 2. (현행과 같음)

② ~ ⑧ (현행과 같음)

제104조의30(우수 선화주기업 인증을 받은 화주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① -----  
-----  
-----  
-----  
-----  
-----  
-----  
-----  
-----



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零)의 세율을 적용한다. 이 경우 제3호 및 제3호의2는 2026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 대해서만 적용하고, 제5호 및 제6호는 2025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 대해서만 적용한다.

## 1. ~ 6. (생략)

## ② (생 략)

### 제106조(부가가치세의 면제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이 경우 제1호, 제4호의2, 제5호, 제9호의2 및 제12호는 2025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만 적용하고, 제2호, 제3호 및 제4호의5는 2026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만 적용하며, 제8호 및 제8호의2는 2014년 12월 31일까지 실시협약이 체결된 것에만 적용하고, 제8호의3은 2015년 1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 1. ~ 6. (현행과 같음)

## ② (현행과 같음)

### 제106조(부가가치세의 면제 등)





